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2. 10. 14

의회 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10. 2일 박남서 의원외 11인 의원 발의

나. 회부 일자 : 1992. 10. 9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 10.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남서 위원)

가. 제안 이유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92.9.21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및 부산직할시 남구 직제 규칙 개정(92.5.28 남구 직제 정원 규칙 제233호)으로 의회사무국 승격및 청소과 증설에 따라 남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설별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가목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환경보호 다음에 "청소"를 삽입함.
- 동조 제4항 나목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5.28일 남구 직제 규칙이 남구 직제 정원 규칙 제239호로 개정되었고, 1992.9.21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2.5.28일 남구 직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과가 증설되었고, 92.9.17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 관련 조례인 본 개정조례안 제3조(상임위원회)에서 제2항의 “환경보호”다음 “청소”를 삽입하는 것과 동조 제4항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 하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칙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므로 지극히 타당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